

##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「건축법」 개정 사항을 반영, 정비하여 건축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정비 (안 제33조)

- 같은 대지에서 두 동(棟)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

종전에는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채광 확보 거리를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, 최소 채광 확보 거리를 10미터로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설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

#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규제심사 : 해당없음[미래지역활력과-5136(2022.10.11.)호]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[가족지원과-43068(2022.10.7.)호]
- 입법예고 : 의견없음 (예고기간 : 2022.10.20. ~ 2022.11.9.)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「건축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
- 주요 내용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최소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10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신속한 개정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